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고객교부용)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본 설명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mark>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정보

상품명	삼성 EMP 리얼리턴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혼합-재간접형) Ce	
상품의 내 용	상품의 내용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회사가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행부여 위험등급	4등급 (보통위험) 투자자산 또는 3년 변동성 또는 최대손실가능성(VaR)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가능)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없음) 세부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참조	

위험등급			위험등급 의미				
			투자자산	변동성 (3년)	97.5% VaR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펀드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25% 초과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변동에 따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25% 이하	50% 이하	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15% 이하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 준의 투자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등급	보통위험	0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10% 이하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5% 이하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 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 게 적합합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0.5% 이하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 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 97.5% VaR모형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집합투자 증 권 (펀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3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합니다.
예금성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같은 법 제3조1에서 정의하는 「예금성 상품(예·적금)」과는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① (원금비보장)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③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님께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④ (해지시 불이익) 집합투자증권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 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부동산·특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 고 투자	Money Market Fund 의 약자로 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상품 설명 내용

기대수익	·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손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능 합니다. · 단,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시 손익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 추정액	·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mark>원금의 0%~100%(원금 전액손실) 손실 발생이 가능</mark> 합니다. ※ ELF(DLF)는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항목 참고
계약종료 요건	·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과 같이 계약상 만기가 있는 펀드들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종료 요건은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항목 참고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고객교부용)

□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

(고난도상품 가입시) 전원처리 및 분쟁조경 절차에 관한 사항 보가능합니다. 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설정일 전월 17시까지 월화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시간이 경과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15시까지입니다. 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②1588-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운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해당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로 남판인 날 중 등은 때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세 ^{주가} 와 위반시왕을 증행하는 서류를 운영 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로,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당 없이 해당 계약의 하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로,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당 없이 해당 계약의 하지를 물이하지 않거나 무용답 하는 경우 신규가 취소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고난도상품 가입시) 청약철회권 (고난도상품 가입시) -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의사 확정일 다음날(승낙확인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향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의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찬·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나에 예약한 급천 등을 운용하는 데 환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의 모집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일 전일 17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시간이 경과되면 철회가불가합니다. 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15시까지입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상 등은 보이는 된 만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당센터(☎1588~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문의 주시가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운영과 본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형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본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제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유원회의 순입을 얻지 아니하고 팬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보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을 설정원보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을 설정원보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두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을 설정된 5. 5년위에 점의 3. 투자신탁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5. 수익자의 충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9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1. 당해 교육보다 점은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경제 금액을 시간된 수 있습니다. (3. 경제 금액을 사용하는 유가선 음과로 지급받습니다. 3. 제한 2만의 사장상에 따라 무차인 음과적 급액을 지급받습니다. (3. 재권 2만의 사장상함에 따라 무자인 음과적 기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권 2만의 사장상의 에로 무자인 부자인 등록 기급받습니다. (3. 개권 2만의 사장수의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과학 전상이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과학 전상이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과 합관에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조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과 합관 2만의 중합과세기준급액을	위법계약해지권	(해당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주2)}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 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청약철회권 (고난도상품 가입시) 대박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만 경우는 제외한다. [주의] 오립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을 전월 17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시간이 경과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외화로 투자되는 상품은 15시까지입니다. 만원처리 및 분쟁조점 철자에 관한 사항 구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 플유웨회의 수인을 얻지 아니하고 편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산태를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 투자산용상는 투자자의 통의 없이 이 투자산탁 해제소규모편도 임의해제)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는무지작의 중요 가산운용사는 투자자의 통의 없이 이 투자산탁을 해제소규모편도 임의해제)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투자산태의 피급수함 5. 수익자의 충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 당행으로부터 환제수으로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무자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음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용소득 함계에 이 충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중합과세					
전체에 맞한 사항 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당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 전투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편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편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산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산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산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산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후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산탁의 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중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산탁 해지 결의 3. 투자산타의 피음수합병 4. 투자산타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충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장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 *** *** *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의] 모집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일 전일 17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시간이 경과되면 철회가			
***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 전으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편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편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주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워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편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편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①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로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사는 본 상품에 내아여 당 은영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사보호법 제36소 제1양에 따라 금융감독원(학 133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산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①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자료열람요구권				
해지(환매)에 관한 사항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①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임 의 하			
①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해지(환매)에	의 무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됩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		① 당행으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 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중요내용 FAQ

Q1.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 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펀드의 신규·매입·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 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 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